

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1,592,530	10,547,776
일반회계	319,165,398	9,574,962
특별회계	32,427,132	972,814
기타특별회계	32,427,132	972,81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05,576	51,167
수질개선특별회계	14,747,228	442,41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42,402	19,272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2,789,778	83,693
기초생활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88,585	11,65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772,246	83,167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4,116,400	123,49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37,231	16,117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727,686	141,831

제 2 조 2013년도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786,849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